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26 선고 2021가합4108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변론 종결2023. 4. 28.

판결 선고2023. 5. 26.

주 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B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았다.

2016. 9. 21.	76,500,000원	90,000,000원	기업종합통장대출	C단체
2019. 3. 11.	265,500달러 ¹⁾ 이하 미합중국통화는 '달러'라고 표시한다.	295,000달러	외화지급보증	주식회사 D

나. C단체(2016. 12. 1. 법인분할로 신용사업을 E은행이 승계하였으나, 이하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은행'이라 한다)는 2020. 12. 22.경 B에 대한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했고,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2021. 1. 4.경 B에 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했다(이하 각각의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21. 5. 12. E은행에 64,172,197원을, 2021. 10. 7. D은행에 270,522,074원을 각각 변제했다. 한편 원고가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490,07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3조 제3항2)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위약금은 3,006,140원³⁾이다.

다. B은 2020. 10.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7. 접수 제522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4)에 따라 원고가 E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부실통지(2020. 12. 22.)와 신용보증사고통지(2021. 1. 4.)를 받을 무렵에 각각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② 원고가 2021. 5. 12.과 2021. 10. 7. 각각 E은행과 D은행에 B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5)

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액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B는 2020. 10. 25.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④ B는 2021년 1월경부터 4대 보험을, 2021년 3월경부터 국세를 각각 체납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2021. 1. 20.경부터 이루어진 점, ⑥ B는 2021. 10. 25.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B의 D은행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가 G은행이고, 채무자는 B의 베트남 자회사 H회사(이하 '베트남 자회사'라 한다)이지, B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또는 D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신용보증은 'B의 베트남 자회사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D은행이 B의 의뢰로 지급보증하는 것에 대한 보증인 사실, ② D은행은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한 B가 다른 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D은행의 지급보증으로 B의 베트남 자회사가 G은행과 여신거래를 한 것이고, B은 D은행의 위 지급보증을 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E은행과 D은행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B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1)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260,000,000원
2	포천시 I에 있는 콘도미니엄 J호 중	6,200,000원

1	이 사건 부동산	260,000,000원
	10분의 1	
합계	266,200,000원	
소극재산(채권자 표시)	가액	
1	K은행	814,754,522원
2	E은행	555,690,575원6) 아래 3)항 기재 표 E은행 대출 잔액 합계액
3	L저축은행	278,575,285원
4	D은행	519,916,580원7) 아래 3)항 기재 표 D은행 대출 잔액 합계액
5	원고	340,190,481원8) 위 1의 나.항 기재 금액 합계액
6	피고	100,000,000원
7	K은행	96,889,712원
합계	2,706,017,155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소극재산 중 E은행과 D은행에 대한 채무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일부 중복되므로, 이 부분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 대표이사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은행은 2006. 5. 30. 채무자를 B으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D은행은 2006. 9. 8. 채무자를 B으로, 채권최고액을 56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E은행과 D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채권(지연이자 포함)을 신고했다.

E은행	B	2006. 5. 30.	수입거래의 신용장 발행	60,000달러	73,404,097원
2011. 9. 15.	기업운전무역금융대출	440,000,000원	482,286,478원		

E은행	B	2006. 5. 30.	수입거래의 신용장 발행	60,000달러	73,404,097원
D은행	2020. 6. 12.	수입신용장	200,000달러	224,485,217원	
2020. 6. 12.	무역금융	200,000달러	224,924,039원		
2020. 6. 12.	종합통장대출	70,000,000원	70,507,324원		

③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B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16. 9. 21.경 기업종합통장대출 90,000,000원과 관련된 것이고,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B의 D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는 2019. 3. 11.경 외화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이다.

④ E은행의 신용보증부실통지서 및 D은행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에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B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대출일자, 대출 과목, 대출금액 등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였다면, 원고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보낸 신용보증부실통지서 및 신용보증사고통지서에도 담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E은행과 D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신고한 B의 채무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B의 E은행과 D은행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다.

4) 또 피고는 베트남 자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도 B의 무자력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은 2021. 10. 25. 폐업신고를 하고, 베트남 자회사에 대한 2020년 재무상황표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베트남 자회사의 자산이 많았거나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면, B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베트남 자회사에 대한 재무상황표 신고를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점, ② E은행의 2021. 1. 7.자 신용보증부실통지서에는 그 부실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현지공장 매출 부진',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의 외화 반출 어려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베트남 자회사의 2019년 미처리결손금이 2,009,303,677원인데, 재무상황표의 전체 자산 10,926,996,884원(그 중 재고자산이 9,140,747,592원 상당이어서 그 실질 가치는 훨씬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이고, 부채는 6,303,324,795원이어서 실질적으로 결손법인으로 보이므로, 베트남 자회사의 자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베트남 자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고려하더라도,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도 없었던 점, B의 해외 자회사의 자산규모나 매출이 상당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신용보증을 한 점, B의 채무 대부분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둔화 시기에 운영비 조달을 위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현실적으로 피고가 B의 무자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대표이사인 F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도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금융기관들 앞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B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E은행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은 과거, 현재, 장래 증감·변동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데 E은행 및 D은행은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위 E은행 및 D은행의 위 채권 중 일부이므로,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E은행과 D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서로 별개의 채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피고도 근저당권자로서 100,000,000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5. 31.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교부권자, 가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를 비롯한 가압류 채권자들은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액만큼의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전부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진숙

판사윤준석

판사유영화

별지

1) 이하 미합중국통화는 '달러'라고 표시한다.

2)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3) = 대상금액 259,977,600원 × 2021. 3. 10.부터 2021. 10. 6.까지 211일 / 365일 × 2%

4)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5) 제10조(상환범위)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6) 아래 3)항 기재 표 E은행 대출 잔액 합계액

7) 아래 3)항 기재 표 D은행 대출 잔액 합계액

8) 위 1의 나.항 기재 금액 합계액